

모두의 존엄이 꽃피는 학교

보호자 소식지

- 학생인권조례 10년이 바꾼 우리 학교의 모습
- 【인권칼럼】 보호자가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실천(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 【인권칼럼】 민법 자녀징계권 조항 삭제의 인권적 의미(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 우리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권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도서 추천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소개

학생인권조례 10년이 바꾼 우리 학교의 모습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공포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존엄이 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는 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공동체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대한민국 최초 공포 (2010년 10월) 체벌금지, 두발자유, 강제야간자율학습 금지 등 대한민국에 화두	교문 앞 등교지도 폐지 (2010년, 경기도) 학생을 단속하는 교문지도를 상호 존중의 교문맛이로	학교 내 체벌금지 법제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1년 개정) 경기학생인권조례, 법령상 체벌금지 규정 토대 마련
모든 학교 인권교육 실시 인간 존엄의 이해·존중이 공동체로 확산되는 경기교육의 출발	9시 등교 실시 (2014년, 경기도) 학생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상벌점제 폐지 (2014년, 경기도) 건강한 성장, 인권친화적인 생활교육 추진
강제 야간자율학습 폐지 (2017년, 경기도) 정규 교과 외 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	생리공결 시 증빙자료 '금지' (2019년, 경기도) 제3차 학생인권실천계획으로 수립	학생 참정권 보장의 길 열려 (공직선거법 2020년 개정)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학생인권의 역사

1988 중·고등학생들의 교육민주화 요구 전국 곳곳 시위	1991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1998 전국단위 학생단체의 학생인권선언서 발표	2000 No Out, 학생두발자유 온라인 서명운동 16만 명 참여	2001 전국단위 학생단체 학교규칙 분석결과 발표 통한 구시대적 학칙 개정 공론화	2004 강익석 학생의 종교의 자유 요구 1인 시위와 단식 (2010 대법원 승소)	2005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권' 결정	2007 「초·중등교육법」 학생인권보장 규정 신설	2010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국 최초 제정 (현재까지 광주·서울·전북·충남 제정)
---	----------------------------------	--------------------------------------	---	---	--	---	---------------------------------------	---

보호자가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실천

- 학생인권조례 10년, 고민해야 할 것들 -

나명주(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라니 감회가 새롭다. 필자가 2011년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그 시기가 떠오른다. 경기도의 2010년 제정을 보며 마음이 급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발 벗고 나서 도봉산으로 대학교 캠퍼스로, 카페, 시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서명용지를 들고 뛰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참교육학부모회 회원 자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인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주위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는 아이, 학교 선생님을 설득하여 서명을 받는 아이 등 회원들이 모이면 각자 자기 집 사례를 공유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당시의 기억이 따뜻한 만족감으로 기억되지만 한편으로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과연 조례대로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인권규정은 없는지 끊임없이 모니터하고 살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공동체 안에서 인권에 대한 쟁점들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적이며 학생인권이 존중되면 교권도 존중된다.’는 여러 보고에도 불구하고 ‘학생만 인권이 있냐, 교사인권은 어떡할 거냐.’라는 말을 인권조례 반대 논리로 가져와 들이대곤 한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다. 제 아이를 관찰하노라면 분명 현재 기성세대와는 다른 행동양식과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인정하고 그들과 더 잘 소통하는 법을 익혀야한다. 지속적인 상호존중을 핵심 가치로 놓고 ‘인권’을 중심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스마트폰이 가장 큰 방해물?”

학습의 가장 강력한 방해물은 스마트폰이라고 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전자기기가 놀이고 학습도구라고 항변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가정에서도 사실 이로 인한 갈등이 더 잦다. 학교생활규정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사생활 및 소유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귀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종료한 즉시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아가 학생 자치적 차원에서 기기의 사용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제재규정 또한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생인권조례의 안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

“학교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 근본적인 질문하기”

코로나-19로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것을 지켜 보며 학교는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나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학교는 학생 개인의 개성과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자아실현이 가능하도록 돕는 배움의 터전이다. 그러므로 학교라는 공간의 주인은 학생이고 학교는 학생이 있을 때에만 그 존재 가치의 의미가 있다.

“인권교육이 교육과정 안에 녹아들어야”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안에 인권교육이 녹아들어야 한다. 외부강사에 의존한 2~3교시 수업으로는 인권조례 설명에 그치기 쉽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인권교육은 상하반기 2회 정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인권보장과 지원을 위해 다른 교육주체들도 인권감수성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학습공동체, 연수, 워크숍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부모교육의 경우 학부모회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학교자치의 주역으로 학부모를 성장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학생인권조례 안착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 학생자치”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맞는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상황의 연속이다. 학생의 의견은 반영조차 할 수 없을 때가 많다. 학생생활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는 학생대표를 참여시키려는 지침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다. 때론 참여는 하나 학생들의 의견이 아니라 학생 회장 개인의 의견일 때가 다반사다. 이는 학교 안에 학생자치 부재의 결과물이다. 일부 혁신학교를 제외하면 학급회의조차도 열리지 않는다.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했을 때 조율하는 법,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와 우리 모두가 노력할 것들, 학급·학교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 이를 위한 학교 안팎과의 연대 등은 민주적 참여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인권이 단지 두발과 복장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과정 안에서 배우도록 해야 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 외치며 피어보지도 못한 귀한 생명을 던진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으로 교육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다. 경쟁으로만 몰아치는 우리 교육에 편승하여 아이를 경쟁의 바다에 밀어 넣었다는 반성 속에서 학부모운동도 시작되었다. 경쟁보다는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적으로 키우겠다는 다짐의 과정이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발 벗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그 포문을 경기도가 열었고 서울·광주·전북·충남 등 총 5개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얼마 전 기능대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던진 한 학생의 사례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들기가 단지 두발과 복장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고의 확장과 책임감을 안겨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다음을 강요받으며 인권침해를 내면화시키는 교육에서 학생을 인간으로 돌아보게 하는 전환점이었다. 그 길에 앞장 선 경기도 교육청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현재 제주를 비롯한 몇몇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준비 중이다. 먼저 앞서간 경기도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10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법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의 인권적 의미

- 학생인권 옹호를 위한 보호자의 책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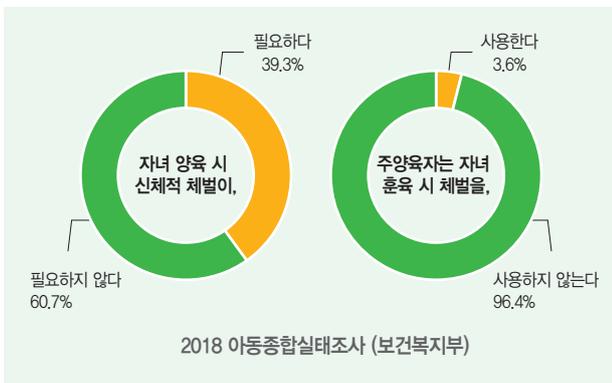
김희진 변호사(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 사랑의 매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
-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금지를 실현하는 동력
- 목적을 불문하고 체벌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
- 학생인권조례는 학내 체벌금지 법규의 실증적 증거
- 체벌금지 실천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무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입법예고

2020년 8월, 법무부는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현행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법무부 공고 제2020-34호)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개정안은 2020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훈육과 부모의 권한, 징계와 체벌에 대한 국내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사랑의 매'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며, 자녀 양육에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0.7%로 필요하다는 응답보다 높았으며, 주양육자의 96.4%는 자녀를 훈육할 때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체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한 법률은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금지를 실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이미 「아동복지법」 상 보호자의 책무(제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체벌을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수단으로 해석하며, 아동폭력을 좁은 범위에서만 바라보는 인식이다. 아동은 미성숙하고, 부족하며,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라는 관점은 체벌을 정당화하는 논거였으며, 학대와 체벌을 분리하는 자의적인 도구로 이용되었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되는 시점으로, 법률은 체벌 또한 아동권리 침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UN, 모든 분야에서의 아동대상 체벌금지 권고

체벌로 인한 아동권리 침해 문제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2019년 9월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본심의에서 반복하여 언급되었다.

-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환경에서,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금지되고 있습니까? 보내주신 정보에 의하면 여전히 한국은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합법적이고 일부 이것이 적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의, 또 다른 많은 국가도 오랜 전통으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 교육을, 이른바 한국에서는 '징계'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중략...) 민법, 특히 제915조를 개정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 언제 한국이 완전히 체벌을 금지할 것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모든 분야에서의 체벌금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권해를 채택하며, 체벌 관련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CRC/C/KOR/CO/5-6, para. 27.). 그 목적을 불문하고 체벌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환경에서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고, 이는 근거 법규에 따라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7.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3호(2011), 신체적 체벌 및 기타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8호(2006),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 종식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세부목표 16.2를 참고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c)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indirect corporal punishment)"과 "훈육적(disciplinary)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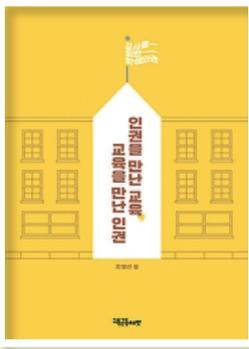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화두

학생인권조례는 법규의 긍정적 영향을 알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이다. 과거에 학생에 대한 체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체벌이 학생에 대한 폭력이며, 그들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인식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0년 10월, 경기도는 국내 최초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졌다. 체벌금지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던 당시에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다.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없으며, 이는 학습권 침해, 교권침해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체벌금지를 문제 삼았다. 권리 실현은 권리가 존중되는 관계를 전제하며, 타인에 대한 존중은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내재화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 대한 체벌과 통제가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던 당시의 관점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시도였으며, 교육의 주제로 학생의 존재론적 지위를 확인하는 출발점이었다.

체벌은 그 사전적 의미부터 '타인에게 직접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타인에 대한 강제력과 위하력은 '모든 인간은 그 존엄성에 있어 동등하다'는 명제에 반한다. 모든 환경에서의 아동대상 체벌금지 법적 규정은 권리 실현을 위한 디딤돌이며, 그 실천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의 책무임을 기억해야 한다.

인권도서 추천

우리 자녀의 학교생활을 인권 관점에서 이해하기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교사를 위한 학생인권

저 자 조영선 | 출판사 교육공동체벗 | 발간일 2020.2.28.

책 내용 잠깐 살펴보기('어는 글' 중에서)

언제나 신학기가 다가오면 긴장되는 것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학생들을 만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학생을 만나다 보니 학생을 파악하고 장악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게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학생과 만났는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의 여부만 기억하기도 했죠.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만남에서 큰 벽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학생인권은 이 벽을 뚫고 인간으로서 학생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란?

-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규범
- 총칙과 학생의 인권, 학생인권의 진흥을 위한 인권교육과 실천계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권,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공동체의 책무 등을 규정함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란?

-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인권침해의 상담 및 구제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되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교 인권 옴부즈퍼슨(ombudsperson) 제도

“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의 인권을 보호받고 싶다면 학생인권옹호관을 찾아주세요 ”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호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상담 및 구제신청 방법

구분	1권역	2권역	3권역
관할지역	수원 평택 안성 성남 용인 여주 이천 광주하남 양평	안양과천 안산 화성오산 부천 군포의왕 광명 김포 시흥	고양 파주 동두천양주 연천 의정부 구리남양주 가평 포천
전화상담	031-820-0632	031-820-0633	031-820-0634
방문상담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3층 학생인권담당실		
구제신청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포털사이트에서 '경기학생인권' 검색)		

※ 전화 및 방문상담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구제신청 등의 청원권 행사는 비밀 보장되고,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